

<資料 1>

東邦生命의 金融再保險을 利用한 構造調整

□ 東邦生命의 金融再保險을 이용한 構造調整 事例

1) 東邦生命의 概要 및 最近 主要實績

□ 東邦生命保險會社의 沿革 및 經營 實績

- 1898년 : 「장병보험주식회사」로 설립
- 1925년 : 「제일장병보험주식회사」로 개칭
- 1945년 : 「신일본생명보험주식회사」로 개칭
- 1947년 : 금융기관재건정비법에 의거, 제2회사(포괄계약인수회사)로서 「동방생명보험상호회사」를 설립

<표 1> 1997년 주요 경영실적

구 분		1997.3달	1997.9달
보유계약고	개인보험	233,863억엔	220,920억엔
	개인연금보험	27,873	25,731
	단체보험	137,572	131,140
	단체연금보험	2,015	11,028
총자산		45,095	42,148

□ 中型級 生保 8개사의 經營實績 惡化

- '97.4월 일산생명의 파산직후에 전반적으로 해약이 급증하여 '97년도 상반기(4월~9월)에 해약율이 전기동기대비 약 87% 증가하였음.
- 일본 생명보험업계중 외국계 등 다수의 소형생보사를 제외하고, 중대형급 생보사중 금번의 일산생명 파산으로 인하여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생보사는 중형급 생보사임.
- 동방생명의 책임준비금중 부채구조는 연금보험(개인 및 단체)의 보유계약이 약 56%에 달하여, 일본의 저금리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차손실이 증가하여 회사의 안전성이 급격히 부실화되었음.
- 또한 동방생명의 경우 자산운용상 대출과 관련한 부실채권 비중이 다른 중견 8개사중에서 가장 높은 1,068억엔에 달하였음.

<표 2> 중형 생보 8개사의 97년도 상반기(4월-9월) 주요실적

(단위 : 억엔, %)

구분	총자산	보험료 등 (수입)	신계약	실효해약
太陽	67,618 (3.6)	6,171 (▲1.0)	10,879 (9.8)	4,836 (19.0)
協榮	55,850 (▲1.0)	3,965 (▲9.8)	40,182 (▲4.0)	28,860 (25.4)
大同	51,522 (4.3)	5,484 (▲2.1)	25,389 (8.6)	17,795 (21.5)
東邦	42,148 (▲8.5)	2,629 (▲13.2)	12,985 (▲6.0)	24,175 (87.1)
富國	42,073 (4.8)	3,559 (▲19.9)	19,070 (▲2.4)	10,566 (17.1)
日本團體	39,667 (▲0.9)	3,173 (▲1.8)	9,347 (▲15.6)	11,904 (80.1)
第百	31,850 (▲4.3)	2,288 (▲8.2)	13,953 (▲28.7)	18,713 (31.0)
東京	14,266 (▲3.2)	850 (▲15.9)	4,536 (▲7.9)	5,082 (38.7)
合計	344,997 (▲0.1)	28,122 (▲7.6)	136,341 (▲5.4)	121,931 (36.6)

(주) () 전년동기 증감임.

실효해약 및 신계약의 경우 개인보험과 개인연금보험을 합한 실적임.

<표 3> 증권생보 8개사의 자산내용 (97.9말현재)

(단위 : 억円, %)

구분	上場國內株式 未實現損益	公表不實 債權額	貸損充當金	株式未實現利益이 제로가 되는 株價水準
太陽	4,667(▲7.7)	769(22.2)	16.3	11.000円엔
協榮	▲192(-)	305(▲0.9)	60.6	18.000円
大同	688(25.5)	548(6.4)	72.0	15.000円
東邦	39(▲81.0)	1,068(78.6)	11.7	17.500円
富國	1,278(▲9.2)	340(334.3)	31.4	13.900円
日本團體	366(42.9)	317(21.1)	71.2	16.000円
第百	▲257(-)	671(▲9.0)	36.5	18.200円
東京	118(200.0)	118(▲36.0)	27.9	17.600円
合計	6,609(▲13.7)	4,138(24.9)	34.9	-

(주) 1. 팔호의 수치는 3월말대비증감을

2. 공표부실채권액은 파산기업, 연체, 금리감면, 경영지원처채권의 합계.

3. 총당금은 공표부실채권액에 대한 채권상각특별계정잔고의 비율.

2) 東邦生命과 GEFA의 金融再保險去來, 營業權讓渡 內容과 展望¹⁾

□ 東邦生命과 GE Financial Assurance의 新規社 設立 合意

○ '98. 2. 18. 동방생명과 GE-Capital Service의 자회사인 GE Financial Assurance (본사 : 미국 버지니아주 ; GEFA)는 新規會社 設立에 合意하였음.

- 신규회사는 「GE-Capital Edison 생명보험주식회사」로 98.3.19일 면허를 취득하여 4.1일자로 영업개시함.

- 신규보험사의 자기자본은 1,440억円で, 이중 자본금은 720억엔 (GEFA각출)이고 나머지 720억원은 동방생명에서 후순위대출로 출자함.

1) 본 내용의 작성시점은 '98.4월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한 내용 및 평가임.

□ 新規會社로의 營業權 등의 讓渡

- 동방생명은 신계약업무를 포함하여 상품, 모집인, 대리점 등과 함께 營業權을 신규회사인 에디슨생명으로 讓渡
(※보험업법 제142조에 의거, 事業讓渡의 認可를 받음)
- 에디슨생명은 영업개시 시작부터 양수받은 지사영업망과 법인영업망을 판매채널로 전국적 營業을 開始

□ 清算會社로서의 契約·維持管理 및 資産運用

- 동방생명은 清算會社로서 존속하게 되어, 계속적으로 既存契約의 維持·管理業務와 資産運用業務를 수행.
 - 동방생명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에디슨생명으로부터 신계약의 30~50%의 共同保險式再保險을 인수하기로 함으로써 收益源을 確保하게 됨
(※10년간 공동재보험식으로 분배받을 수익 : 합계 약 900억円)
 - 동방생명은 신계약업무를 비롯한 營業權讓渡의 代價로 700억円을 수취.
- 동방생명의 기존계약을 에디슨생명에 契約移轉한 것은 없으므로 契約內容 등의 變更은 없음
 - 따라서, 동방생명의 현존하는 모든 보유계약에 대해서 동방생명의 파산시 GEFA 및 에디슨생명은 일체의 責任이 없음
- 에디슨생명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서 사무서비스를 대행
- 동방생명과 GEFA간의 금융재보험 출자, 영업권양도 등의 거래는 98.3.31까지 완료.

□ 金融再保險의 代價

- 동방생명은 금융재보험의 대가로 받게 되는 출제수수료 500억엔을 賣

任準備金 積立増額에 사용

- 日本의 대장성 通達 「財務再保險의 取扱에 關한 基本事項」에 의거, 금융재보험 출재수수료는 전액 책임준비금 적립증액에만 사용가능.

□ 金融再保險 및 營業權 讓渡에 따른 東邦生命의 問題點 및 向後 展望

○ 不實債權의 처리 문제

- '97.9월말 현재 동방생명의 공표부실채권액은 1,068억円인데, 영업권양도의 대가로 수취하는 700억円등으로 처리할 계획.
- 그러나 동방생명이 에디슨생명에 720억엔을 후순위대출로 출자키로 함에 따라 부실채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과적으로는 금융재보험으로 받은 출재수수료를 책임준비금 적립증액에 사용함으로써 支給餘力을 향상시킴.
- 다만, 금융재보험으로 우량한 보험계약은 에디슨생명으로 출재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당분간은 보유계약중 대부분이 불량계약만 남게 되어 Bad Insurance Company가 될 것임

○ 이에따라 98결산시점에서는 리스크가 높은 보험계약이 대부분 잔류되어 利差損失이 대폭 발생할 것으로 보임

(※ FY96 이차손실 : 총600억円)

(※위험준비금을 제외한 책임준비금자산에서 약1.2~1.3% 역마진 발생)

- 신계약영업은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수입은 없고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과 결산시의 적자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방생명의 壽命은 1~2년 정도 단명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결국에는 동방생명은 支給不能이 되고 그 清算은 預金保險機構(정부)가 떠맡아야 할 것임

□ 東邦生命의 破産時의 處理

- 동방생명의 파산시에 에디슨생명 및 GEFA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동방생명과 GEFA의 계약체결시, 협정문안에 동방생명과 에디슨생명은 서로 독립된 회사이며 신회사는 동방생명의 손익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기함

□ GEFA의 利點

- GEFA는 신용카드사업이나 자동차리스 등의 對소비자금융을 일본시장에서 제공해 왔는데 금번 금융재보험거래로 일본에서 전국적인 대규모의 보험영업에 진출하게 됨

□ 日本 保險業界의 時角

- 동방생명은 그대로 방치할 경우시 조만간에 파산할 것으로 판단.
- GEFA가 동방생명의 파산시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함에 따라 결국에는 동방생명의 파산시 업계가 예금보험기금을 각출하여 처리하게 됨으로써 불만이 표출
- 업계는 外資(GEFA)가 일본에 보험사업 진출하는데 일본보험업계가 자금을 대는 격이 되어 불만을 표출함.

※ GE Capital의 개요

- ◆ GE-Capital은 미국 General Electric의 100% 자회사로 총자산 2,500억\$의 세계최대급의 논뱅크임
- ◆ GE-Capital의 주요사업으로는 설비운영·관리, 중간시장파이낸싱, 전문적금융사업, 특수보험, 자동차리스, 주택론, 신용카드 등 폭 넓은 소매금융사업을 전개.
- ◆ GE-Capital에서 가계정보협상품은 GEFA를 통하여 제공.

<資料 2>

金融再保險을 利用한 構造調整 事例

□ 大藏省 告示 제233호(財務再保險 規程)

大藏省 告示 제233호

「보험업법시행규칙(1996년 대장성령 제5호)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장대신이 정한 재보험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1998년 6월 10일부터 적용한다.」

大藏大臣 松永 光

제1조(재무재보험) ①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한다.)제71조제2항에 규정한 대장대신이 정한 재보험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보한 경우에 당해재보험에 부보한 부분에 관계된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고, 당해재보험에 부보한 부분에 관계된 보험계약에서 당해재보험에 부보한 후에 발생이 예상되는 수익(이하, 이항에서 「장래수익」 이라 한다.)을 出再保險受入手數料(수재보험회사(재보험을 인수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원수보험회사(보험계약을 재보험에 부보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급하는, 당해재보험에 부보한 보험계약의 집단(이하 이항에서 「출재보험군단」 이라 한다.)에 관계된 장래수익을 기초로 계산한 수수료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서 미리 수수하는 재보험으로 다음에 규정하는 모든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재보험회사가 국내 및 해외의 감독당국에서 재보험에 관계된 사업 면허를 부여받은 보험회사로 기업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규칙(1973년 대장성령제5호) 제1조제13호의2에 규정하는 지정신용등급기관에서 AA- 또는 Aa3의 이상의 신용등급을 부여받은 보험회사일 것.
 2. 원수보험회사가 수재보험회사로부터 수수하는 출재보험수입수수료는 현금에 의한 것일 것.
 3. 재보험계약은 출재보험군단이 전부 소멸한 경우, 또는 원수보험회사에 의한 증도해약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소멸하는 것일 것.
 4. 원수보험회사가 재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재보험회사가 일방적인 해약을 할 수 없을 것.
 5. 원수보험회사를 청산하여 보험계약을 전부 소멸시키는 경우(원수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가 인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원수보험사는 잔존해 있는 출재보험군단의 손실액(출재보험수입수수료중 소멸시 출재보험군단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존해 있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수재보험회사에게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
 6. 원수보험회사가 합병 또는 포괄이전에 의해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하는 경우에 당해 재보험계약이 계약조건의 변경없이 당해 타보험회사의 승계되는 것일 것.
 7. 원수보험회사와 수재보험회사간의 결제는 최소 3개월에 1회이상일 것.
- ② 수재보험회사가 전항제1호에 규정하는 등급을 부여받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수재보험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출재보험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호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종류) ①재무재보험(전조의 재보험을 말한다.)의 종류는 다음의 두 종류로 한다.

1. 공동보험식재보험
2. 수정공동보험식재보험

② 전조제1호의 공동보험식재보험이란, 수재보험회사가 원수보험계약(원수보험회사가 인수한 보험계약을 말한다. 차항에서도 같다.)에 관계된 리스크중 당해 재보험에 부분된 부분에 관계된 모든 리스크를 출재비율(수재보험회사가 재보험을 인수한 보험계약의 원수보험계약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차항에서도 같다.)에 따라 인수하고, 당해 인수한 부분에 관계된 책임준비금(보험업법(1995년 법률제105호)제116조에 규정한 책임준비금을 말한다. 차항에서도 같다.)의 적립 및 당해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산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수정공동보험식재보험이란, 수재보험회사가 원수보험계약에 관계된 리스크중 당해 재보험에 부분된 부분에 관계된 모든 리스크를 출재비율에 따라 인수하고 당해 인수한 부분에 관계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원수보험사가 당해 책임준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산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日本의 財務再保險 制度(通達規程)

(※ 97.12월 제정 ; 대장성고시 발동에 의해 동통달은 폐지되었으나 내용은 대부분 告示에 반영됨)

1) 「財務再保險」의 定義

본 通達에서 말하는 「財務再保險」이란, 원수회사가 보유하는 보험계약

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이전하는 재보험계약으로, 당해보험계약에서 장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出再保險手數料(초년도 커미션)」로서 미리 일정액을 收受하는 것을 말한다.

(註1)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란 이하의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 ① 사망율, 발생율 등 사차손익 관련 리스크
- ② 사업비 등 비차손익 관련 리스크
- ③ 투자수익 등 이차손익, 가격변동손익 관련 리스크
- ④ 해약익, 실효익 등 책임준비금 관련 리스크

(註2) 「보험계약에서 장래에 걸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收益」이란, 다음과 같다.

-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기간을 통산하면 收益을 올릴 수 있다. 이 수익은 보험료수입, 이자배당금수입, 보험금지출, 사업비지출 등의 현금흐름(cash flow)으로 실현화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망율, 투자수익, 사업비의 지출상황, 유지율의 변동에 따라 당초 가정한 수익이 변동할 수도 있다.

(註3) 「出再保險手數料(초년도커미션)」란, 다음과 같다.

- 출재보험군단에 관계되는 신계약비 및 장래수익의 현재가치를 기본으로 하여 受再會社(재보험회사)와 原受會社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또한 출재보험수수료에 대해서는 원수회사가 상환할 의무가 없다.

2) 「財務再保險」의 種類

「재무재보험」의 종류는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가 이전되는 다음의 2종류로 한다.

(1) 共同保險式 再保險

受再會社(재보험회사)가 원수계약의 조건대로 출재비율에 따라 원수계약과 동일한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수재회사에 의한 출재비율에 대응하는 부분의 책임준비금의 적립과 책임준비금상당액의 자산관리를 수반하는 것(재보험계약 체결시에 出再會社는 受再會社에 責任準備金相當額의 資産을 移管한다.)

(2) 修正共同保險式 再保險

受再會社(재보험회사)가 원수계약의 조건대로 출재비율에 따라 원수계약과 동일한 리스크를 인수하는 방식인데, 責任準備金은 수재회사로 移管하기는 하지만 책임준비금상당액 資産의 管理는 原受會社가 행하는 것.

3) 「出再保險手數料」의 사용처

「출재보험수수료」의 사용처는 책임준비금적립 增額을 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財務再保險」의 導入要件

(1) 導入限度

특별히 정한 규정은 없지만, 도입취지와 收支에 미치는 영향(코스트)을 감안하여 회사 및 출재보험군단의 보수적인 장래수지분석을 기초로 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2) 受再會社(再保險會社)의 資格要件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적기관(감독당국)으로부터 재보험 사업면허를 부여받은 보험회사중, '企業內容 等の 公示에 關한 施行規則'(1973년 대장성령 제5호) 제1조 제13호의2에 규정된 指定信用等級機關으로부터 원칙적으로 AA 또는 Aa 이상의 등급을 취득하고있는 보험회사로 한다.

(3) 再保險契約書 記載事項

원수회사와 수재회사(재보험회사)간에 교환하는 재보험계약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① 보험계약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가 수재회사로 이전될 것
- ② 수재회사는 출재보험군단에 관한 원수회사의 보험금, 급부금, 해약 환급금등의 지급에 대해 출재비용에 따른 금액의 지급을 약속할 것
- ③ 「출재보험수수료」의 수수방법에 관한 사항
- ④ 재보험계약의 소멸은 출재보험군단이 全件 소멸한 경우 또는 원수회사가 중도해약을 한 경우로 한정할 것
- ⑤ 수재회사에 의한 일방적인 재보험계약의 해제는 할수 없음
(원수회사가 재보험료를 납입치 않는 경우는 제외)
- ⑥ 원수계약이 全件 소멸한 때에 잔존해 있는 출재보험군단의 손실(출재보험수수료의 미반환분을 포함)에 대해서는 원수회사는 수재회사에 지불할 필요가 없음
- ⑦ 출재보험군단에서 수익이 충분히 발생하지 않는 경우 등의 취급을 명확히 해야함.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됨.
 - A. 출재보험군단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실은 수재회사에 귀속하고 원수회사에 변제를 요구할수 없을 것
 - B. 출재보험군단에서 수익은 발생하지만 그것이 少額인 경우에는 원수회사에 재보험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 C. 상기 A, B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있어서도 출재보험계약이 보유되고 있는 한 재보험계약은 지속될 것
- ⑧ 원수회사가 支給不能이 된 경우의 취급에 관한 사항
 - A. 원수회사를 청산하여 보험계약들을 전부 소멸시키는 경우(보험계약을 타보험회사가 실질적으로 승계한 경우를 제외)에는 잔존해 있는 出再保險群團의 損失(출재보험수수료의 미반환분을 포함)에 대해서 원수회사는 수재회사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점

또한 보험회사가 경영파산한 경우 保險契約者保護에 關한 法令이 시행된 때에는 본규정을 당해법령에 의거, 개정할 것을 재보험계약서에 별도명기할 수있을 것

B. 합병·포괄이전에 의해 보험계약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재보험계약은 원수계약을 승계한 보험회사가 승계할 것

C. 합병·포괄이전에 의해 契約內容을 變更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상기 B와 동일하게 할 것.

또한 재보험계약의 내용은 원수계약의 내용변경에 관계없이 계약시의 약관에 의거한 보험료·보험금 지급요건대로 승계할 것

⑨ 수재회사가 지급불능이 된 경우의 취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재보험금 등 재보험에 관련된 채권의 취급을 재보험계약서에 규정할 것

⑩ 원수회사와 수재회사간에 결제는 적어도 4분기에 1회행할 것

5) 會計處理

회계처리는 종래 재보험과 동일한 처리를 행하는 것으로 하고 재무제표에 「출재보험수수료」에 해당하는 현재잔고를 註記하는 것으로한다.

6) 當局에 대한 報告

(1) 「재무재보험」을 취급하는 경우 및 「재무재보험」의 중도해약을 하는 경우에는, 원수회사가 각각 별지양식 1, 2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事前에 당국에 申告하는 것으로 한다.

(2) 「재무재보험」의 취급을 하고 있는 동안(再保險契約中)은 원수회사가 再保險收支計算書(재무재보험계약이 2이상 있는 경우는 각각)를 별지양식 3 또는 4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당국에 提出하는 것으로 한다.

<別紙様式 1>

문 서 번 호

년

월 일

大藏省銀行局長귀하

보험회사명
대표자명

인

「財務再保險」契約締結申告書

「재무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고합니다.

재무재보험을 하는 이유	
재보험회사명	
재보험회사의 개요 (신용등급 포함)	
원수회사와 재보험회사간의 당해 재보험계약이외의 거래	
재보험계약의 형태	
재보험계약체결 예정일	
출재개시 예정일	
재보험기간	
출재하는 보험종류 및 출재비용 (원수회사의 보유계약고중 비율)	
재보험회사에 이전되는 리스크 내용	
출재보험수수료(초년도커미션)의 금액	
재보험료의 금액(내역 포함)	
기타 재보험계약의 개요	
기계약해 있는 재무재보험의 개요 (재보험회사명, 재보험계약체결일, 출재 보험수수료의 금액등)	
출재한 보험군단의 수지전망 (재보험기간분)	

1. 신고에 있어서는 재보험협약서의 사본 및 원수회사의 장래수지분석표를 첨부할 것
2. 이미 계약해 있는 재무재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무재보험의 계약체결신고서의 사본을 첨부할 것.

<別紙様式 2>

문서번호

년월일

大蔵省銀行局長귀하

보험회사명
대표자명 인

「財務再保險」契約中途解約申告書

「재무재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자 다음처럼 신고합니다.

중도해약의 이유		
재보험회사명		
재보험계약의 형태		
재보험계약체결일		
출재개시일		
재보험계약의 해약예정일		
출재보험의 종류		
출재보험군단의 규모	(계약시)	
	(해약시)	
청산금의 수수 개요		

<別紙樣式 3>

再保險收支計算書(共同保險式再保險)

[재보험수지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협약 시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출재시 책임준비금 이전액 ①							
출재보험수수료(초년도커미션) ②							
납입재보험료 ③							
재보험금(만기보험금,급부금등을 포함) ④							
재보험금환급금(해약·실효환급금포함) ⑤							
출재보험 사업비 ⑥							
출재보험배당금수입(⑬-⑮-전년도⑭-16) V ₀ ⑦							
결제액(-①+②-③+④+⑤+⑥+⑦) ⑧							

주 : ⑦란의 전년도⑭는 전년도의 차기이월액에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운
용실적수익율등)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자)을 포함

[수재회사의 처리] (원수회사의 보고에 의하여 수재회사에서 처리)

구 분	협약 시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수재보험책임준비금 전입액 ⑨							
구분	전기말 수재보험책임준비금 ⑩						
	당기말 수재보험책임준비금 ⑪						
	수재보험 예정이자 ⑫						

[재보험배당금] (수재회사의 보고에 의하여 작성)

구 분	협약시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출재보험군단의 수익(③-④-⑤-⑥-⑨) ⑬						
차기이월손실(전년도⑭-⑬+⑮) V ₀ ⑭						
출재보험 납입부가보험료 ⑮						
수재회사로의 지급액(②에 관련된 반환액) 16						
수재회사로의 지급누계액(②에 관련된 반환누계액) 17						

註 : ⑭ 란의 전년도⑭) 는 전년도의 차기이월액에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 (운용실적수익율등)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자)을 포함

<別紙樣式 4>

再保險收支計算書(修正共同保險式再保險)

[재보험수지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협약시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출재시 책임준비금 이전액 ①						
출재시 예탁재보험책임준비금(①과 동액) ②						
출재보험수수료(초년도커미션) ③						
납입재보험료 ④						
재보험금(만기보험금, 급부금등을 포함) ⑤						
재보험금환급금(해약·실효환급금포함) ⑥						
보관재보험책임준비금(⑨-⑧) ⑦						
전기말 보관재보험책임준비금 ⑧						
당기말 보관재보험책임준비금 ⑨						
예탁재보험책임준비금 이율(%) ⑩						
예탁재보험책임준비금 지급이자(⑧×⑩) ⑪						
출재보험 사업비 ⑫						
출재보험배당금수입(⑮-⑰-전년도⑯-⑱) V ₀ ⑬						
결제액(-①+②+③-④+⑤+⑥+⑦-⑪+⑫+⑬) ⑭						

주 : ⑩란은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운용실적수익율등)임
 ⑬란의 (전년도 ⑯)은 전년도의 차기이월액에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
 (운용실적수익율등)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자)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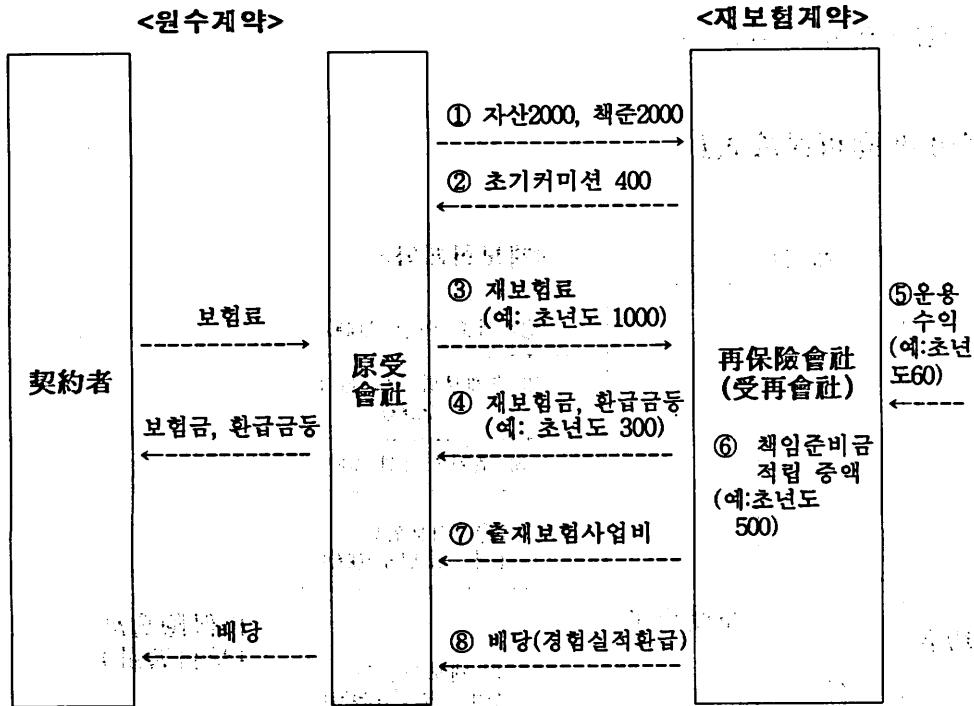
[재보험배당금] (수재회사의 보고에 의하여 작성)

구 분	협약시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년 도
출재보험군단의 수익(④-⑤-⑥-⑦+⑪-⑫) ⑮						
차기이월손실(전년도 16-⑮+17) V ₀ ⑯						
출재보험 납입부가보험료 ⑰						
수재회사로의 지급액(③에 관련된 반환액) ⑱						
수재회사로의 지급누계액(③에 관련된 반환 누계액) ⑲						

주 : ⑯란의 전년도 ⑯)은 전년도의 차기이월액에 재보험계약서에서 정한 이율
 (운용실적수익율등)을 곱하여 계산한 것(이자)을 포함

既契約블럭의 出再 事例

【共同再保險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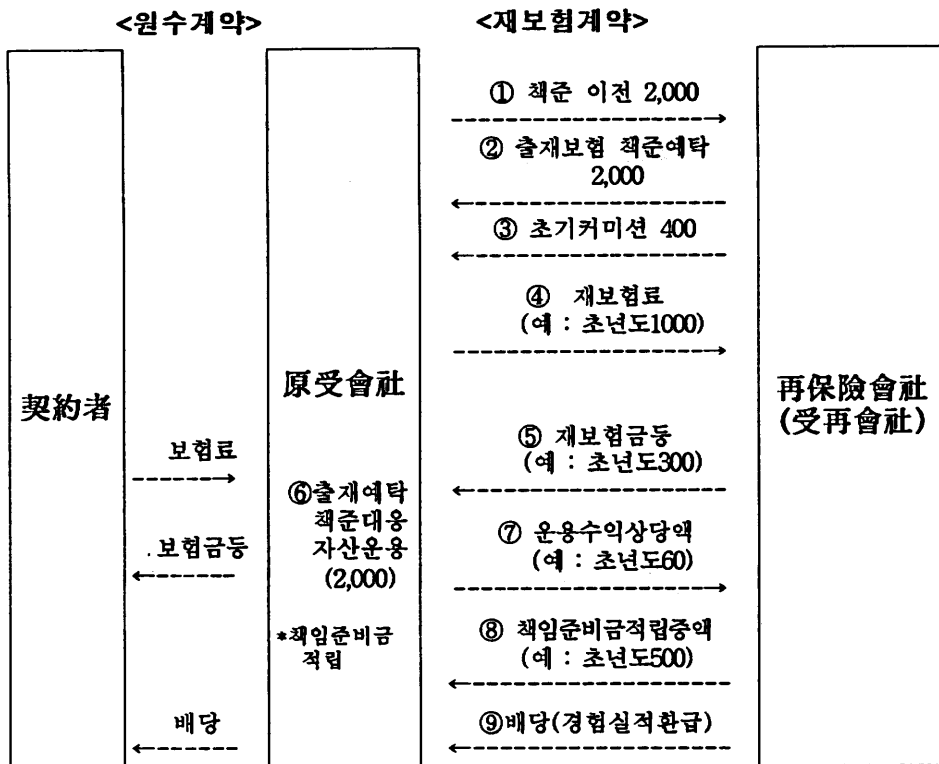


- ①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자산 2,000(책준상당)과 책임준비금 2,000을 수재 회사에 이전하며, 책임준비금은 수재회사에 적립됨
 - ② 초기커미션 400이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지급됨
 - ③ 계약체결 이후 보험료는 원수회사로부터 수재회사에 재보험료로서 납입됨
 - ④ 보험금, 환급금등은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재보험금 등으로서 지급됨
 - ⑤ 수재회사에서는 책임준비금대용자산을 운용하여 수익 얻음
 - ⑥ 수재회사에서는 책임준비금 적립증액을 함
- 예컨대, 계약체결초년도의 재보험료가 1000, 재보험금등이 300, 운용

수익이 60, 책임준비금적립증액이 500이라고 하면, 그 결과로서 수재 회사에는 260의 이익이 발생함

- ⑦ 수재회사가 원수회사에 보험사무관리대행에 대한 대가로 출재보험사 업비 지급
- ⑧ 초기커미션의 일부변제, 리스크차지, 경비를 공제한후, 원수회사에 배당금으로서 이익을 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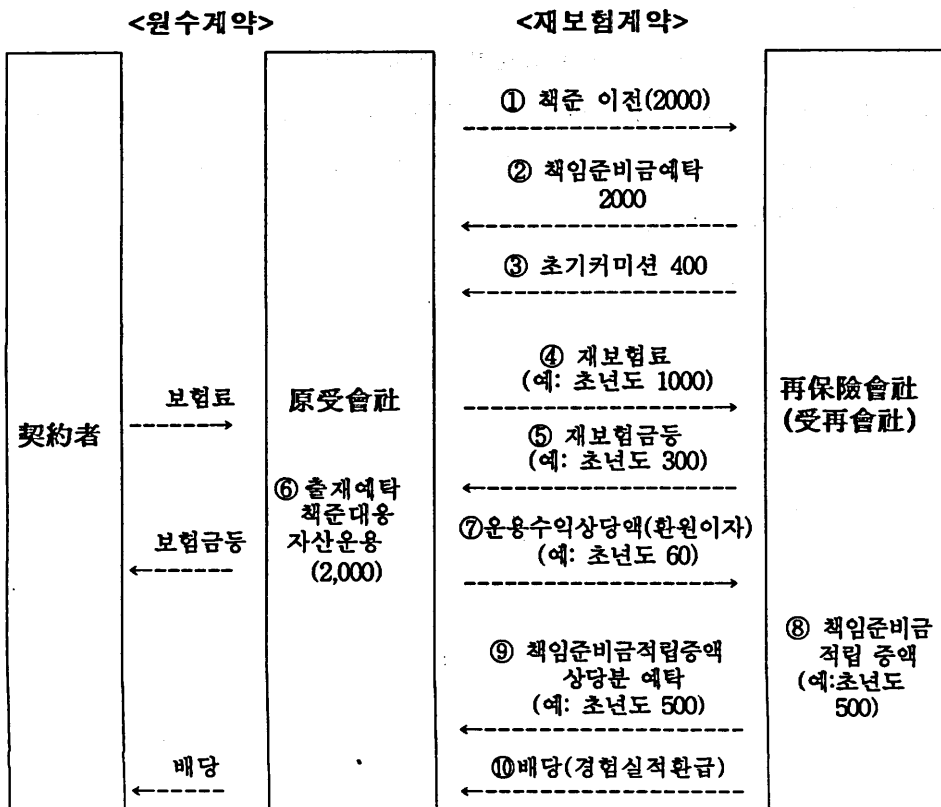
【修正共同再保險式】



- ①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책임준비금(2,000)을 수재회사에 이전
- ② 수재회사는 원수회사에 수재받은 책임준비금(2,000)을 예탁함. 결과적으로, 자산은 원수회사에 殘留됨
- ③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초기커미션 400이 수재회사로부터 원수사에 지급됨

- ④ 계약체결후 보험료는 원수회사로부터 수재회사에 재보험료로서 납입됨
- ⑤ 보험금 등은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재보험금 등으로서 지급됨
- ⑥ 출재예탁받은 책임준비금대용자산은 원수회사에서 운용함
- ⑦ 발생한 운용수익액이 원수회사로부터 수재회사에 지급됨
- ⑧ 책임준비금積立増額 상당액이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지급됨
 - 원수회사에서 책임준비금적립이 증액됨
- ⑨ 초기커미션의 일부변제, 리스크차지, 경비를 공제한후, 원수회사에 배당금으로서 환원.
 - 예컨대, 계약체결초년도의 재보험료가 1000, 재보험금등이 300, 운용수익상당액이 60, 책임준비금적립증액 상당액이 500이라고 하면, 그 결과로서 수재회사에는 260의 이익이 발생함

【責任準備金の 預託을 수반하는 共同再保險式】



- ①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책임준비금(2,000)을 수재회사에 이전
- ② 수재회사는 원수회사에 수재받은 책임준비금(2,000)을 예탁함. 이때문에 자산은 원수회사에서 소유되고 또한 원수회사의 대차대조표상에 再保險借 2000이 계상됨
- ③ 재보험협약 체결시에 초기커미션 400이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지급됨
- ④ 계약체결후 보험료는 원수회사로부터 수재회사에 재보험료로서 납입됨
- ⑤ 보험금 등은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재보험금 등으로서 지급됨
- ⑥ 출재예탁받은 책임준비금대용자산은 원수회사에서 운용함
- ⑦ 발생한 운용수익 상당액이 원수회사로부터 수재회사에 지급됨
- ⑧ 수재회사에서 책임준비금을 적립중액함
- ⑨ 책임준비금적립중액 상당액이 수재회사로부터 원수회사에 예탁됨.
- ⑩ 초기커미션의 일부변제, 리스크차지, 경비를 공제한후, 원수회사에 배당금으로서 환원.
 - 예컨대, 계약체결초년도의 재보험료가 1000, 재보험금등이 300, 운용수익 상당액이 60, 책임준비금적립중액이 500이라면, 그 결과 수재회사에는 260의 이익이 발생함(또한 책임준비금적립중액 상당액 예탁은 현금의 이동일 뿐 손익은 아님)